

2023 다가치포럼 제1차 토론회

2023. 3. 21.(화) 15:00~17:00

구로아트밸리에술극장 소강당

복지사각지대_{로서}의 이주민 사회 들여다보기⁺

 **YouTube** '구로문화재단' 채널
본 포럼은 유튜브 생중계로도 진행됩니다.

발제 1

박민정(IOM 이민정책연구원)

발제 2

이진혜(이주민센터 친구)

토론 1

이정은(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토론 2

김동훈(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주최

다가치포럼

주관

구로문화재단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후원

LC TECH KOREA

목 차

01 행사순서	07
---------	----

02 주제발표	11
---------	----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3
--------------------	----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사무국장	31
--------------------	----

03 주제를론	39
---------	----

이정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팀장	41
----------------------	----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센터장	47
----------------------	----

01

2023 다(多)가치포럼
제1차 토론회
행사순서

2023 다(多)가치포럼 제1차 토론회

행사순서

시 간	내 용
14:30 - 15:00	참석자 등록
15:00 - 15:05	개회 및 행사 안내
15:05 - 15:15	인사말
15:15 - 15:20	단체사진 촬영
15:20 - 15:50	주제발표 ①
15:50 - 16:20	주제발표 ②
16:20 - 17:00	주제토론 및 질의응답
17:00 -	폐회

- 개회사 정연보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
- 축 사 윤건영 (구로을 국회의원)
곽윤희 (구로구의회 의장)
김경애 (재한동포문인협회 회장)
- 폐회사 김정룡 (다가치포럼 운영위원장)

- 좌 장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대표)
- 발 제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사무국장)
- 토 론 이정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팀장)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센터장)

02

2023 다(多)가치포럼

제1차 토론회

주제발표

외국인 주민 복지 현황과 쟁점

박 민 정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다가치포럼 제1차 토론회

외국인 주민 복지 현황과 쟁점

2023. 4.



Contents

I 법적 쟁점

II 이주민 복지 현황

출처: 김지혜. 2021. '모든 국민'이라는 허구적 보편성: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 외국인 배제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비판. 법과 정책연구 제21집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김복기. 2019.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상 지위. 법제연구 55. 한국법제연구원.
국미애. 2022. 이주민 차별과 사회적 배제 대응 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법적 쟁점



법적 쟁점

논의 배경



▶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배제 논의

- 긴급재난지원금, 공적 마스크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등
- 재난문자나 진단검사 자료 등 정보 접근성

▶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사회권 논의

- 이주배경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 아동 보육지원금 논의 등

I

법적 쟁점



건강권 관련 국내법

헌법에서 규정된 건강권

- 제34조 제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제36조 제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6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5

I

법적 쟁점



건강권 관련 국내법

보건의료기본법

-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 제10조 (건강권)
 - ①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6

I

법적 쟁점



사회보장 관련 국내법

헌법에서 규정된 사회보장

-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국민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제34조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7

I

법적 쟁점



사회보장 관련 국내법

사회보장기본법

- 제2조 (기본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 제9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 (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8

I

법적 쟁점



외국인 적용

외국인 적용

• 헌법 제6조

-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I

법적 쟁점



국제원칙 : 건강권

건강권(Right to Health)

- 세계보건기구(WHO) 헌장에서 최초 규정 (1946년)
: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하는 것은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경제적 혹은 사회적 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인류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이다
→ **건강권은 인간의 기본권임**을 선언함

10

I

법적 쟁점



국제원칙 : 건강권

건강권(Right to Health)

- 세계인권선언 제25조 (1948년)
: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 **건강권이 사회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임을 밝힘**
※ 사회보장권의 경우, 세계인권선언 제22조 규정 참조

11

I

법적 쟁점



국제원칙 : 건강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 제12조
 1. 본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2. 본 규약의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다.
 - (a) 사산율 및 영유아 사망률 감소와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규정
 - (b) 환경 및 작업장 위생의 개선
 - (c) 유행병, 풍토병, 직업병 등에 대한 예방, 치료, 관리
 - (d) 질병 발생시 모든 의료 서비스와 치료를 보장하는 환경 조성

12

I

법적 쟁점



국제원칙 : 건강권

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GCM)

- 성취 가능한 최고 수준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
- 포괄적인 법률, 보건정책과 서비스를 통한 형평성과 차별금지 보장
- 사람 중심, 이민자와 성인지적, 연령 고려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
- 건강상태에 따른 제한없는 보건의료 지원
- 범정부적, 범사회적 정책
- 보건정책, 전략, 계획, 개입 과정의 이민자 참여 및 사회적 포용 증진
- 국가, 지역, UN 체계, 그 외 이해관계자 간의 파트너십 구축과 협력

출처: <https://www.who.int/migrants/about/health-component-GCM.pdf?ua=1>

I

법적 쟁점



국제원칙 : 이주민 건강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3 GOOD HEALTH AND WELL-BEING

▶ 모든 연령대의 건강과 웰빙 보장
3.8. 보편적 건강 보장 달성

이민자 건강의 주류화

이민자와 수용국 커뮤니티의 건강 관련 정책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제조건이 됨.
보편적 건강 보장 범위에 이민자가 포함되어야 함.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1 NO POVERTY

5 GENDER EQUALITY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10 REDUCED INEQUALITIES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출처: WHO. 2021. The Health of Refugees and Migrants.
 // e-learning-ss-20-1-175726ac-674d-4ba9-8a53-39c50bc4d1ff.pdf

I

법적 쟁점



국제원칙 : 코로나 19 관련 국제이주 원칙

주요 정책 영역	사례
사실기반/데이터 중심 이주 논의 및 정책, 계획 수립	아일랜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23개 언어로 신속히 번역해 이주민 커뮤니티를 비롯한 전국에 배포 튀니지: 지방정부와 협력해 이주노동자 인구조사 실시 및 인식교육과 안전용품 배포
취약성 고려한 이주자 인권, 안전, 복지 보장	스페인: 이민자 구급 시설 내 인원 모두 석방 태국: 외국인 자동 비자 연장 조치
국경관리 강화 및 초국적 범죄 방지 등으로 비정규 이주 문제 해결	필리핀: 해외노동자복지청의 귀국 노동자 생계지원 프로그램 재가동 아랍에미리트: 이주 노동자를 위한 노동허가증 및 비자 자동 갱신
정규 이주와 양질의 일자리 보호 및 이주의 발전 기여 효과 강조	요르단: 귀국하고자 하는 노동 이주자에게 일과 관련해 발생한 수수료나 벌금 면제 포르투갈: 체류허가 신청 중인 모든 이주자 및 난민신청자에게 일시적 체류허가 및 시민과 동등한 사회보장 서비스 보장
사회적 포용 및 이주자 통합 증진	캐나다 (퀘벡주): 체류자격이나 보험 소유 여부 관계 없이 모든 이주자들이 코로나19검사 받을 수 있음 그리스: 온라인 교육을 위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10개 언어로 번역해 1,500여명의 난민 등 이주자 어린이의 등록 지원

출처: IOM. https://www.iom.int/sites/g/files/tmzbd1486/files/our_work/DMM/Migration-Health/mhd_infosheet_gcm_dec2018_for_website.pdf

I

법적 쟁점



국제원칙 : 코로나 19와 국제이주 원칙



- ① 코로나19 기간 동안 외국인의 비자와 노동허가
- ② 외국인 밀집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예방조치
- ③ 외국인의 코로나19 관련 의료서비스 접근성
- ④ 코로나19 실업지원금 접근성
- ⑤ 사회안전에 대한 접근성
- ⑥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제공
- ⑦ 외국인의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조치(예: 의료진 역할 수행 등)
- ⑧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데이터 수집(역학조사 중심)
- ⑨ 코로나19 사회경제적 영향변수로서 외국인 데이터 수집
- ⑩ 해외로부터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디아스포라 기금
- ⑪ 코로나19 기간 동안 송금의 흐름
- ⑫ 외국인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귀환과 지속적 재통합 촉진 조치

출처: iom-ireland-rapid-policy-survey-report.pdf



이주민 복지 현황



이주민 복지 현황



유형별 현황

- 복지제도란,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
- 복지제도의 유형
 -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외국인특례규정
 - 사회보험 : 기여에 기반, 체류자격별 조건 부여
 - 사회서비스 : 대상과 영역에 따라 개별 법령으로 규정

II

이주민 복지 현황



유형별 현황

- 복지제도란,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
- 복지제도의 유형
 -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외국인특례규정
 - 사회보험 : 기여에 기반, 체류자격별 조건 부여
 - 사회서비스 : 대상과 영역에 따라 개별 법령으로 규정

II

이주민 복지 현황



공공부조 :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 제1조의 2(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 2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 제2조의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4.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II

이주민 복지 현황



사회보험 : 건강보험

목적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에 대한보험급여 제공

대상

대한민국국민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참조

21

II

이주민 복지 현황



사회보험 : 산재보험

- 목적
: 일을 하다가 생긴 부상, 질병, 장애, 사망 등에 대한 피해 보상
 - 대상
: 대한민국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 외국인 포함
 - 내용 : 의료비 지원과 일을 못하는 기간의 일정 급여 지원
 - 보상 범위 :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 ※ 미등록외국인도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법적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22

II

이주민 복지 현황



사회보험 : 고용보험

- 당연적용 대상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 국가 상호주의 원칙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 임의가입 대상: 단기취업(C-4), 전문직(E-1~E-7), 비숙련노동직(E8~E10)
-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은 노동시장 가입을 제한함

※ 법적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 3(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출처

• 이민정책연구원,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용 자료집, 2021. 재인용: 근로복지공단 제공 자료.

23

II

이주민 복지 현황



사회보험 : 국민연금

- 목적 : 은퇴 이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나이가 들거나 사고 혹은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하여 더 이상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 경우 생활안정을 도모함
- 종류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 외국인의 경우, 반환일시금,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수급권 소멸 예외 단, 상호주의에 따라 해당국이 대한민국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산업연수생은 반환일시금 지급 가능

※ 법적근거 :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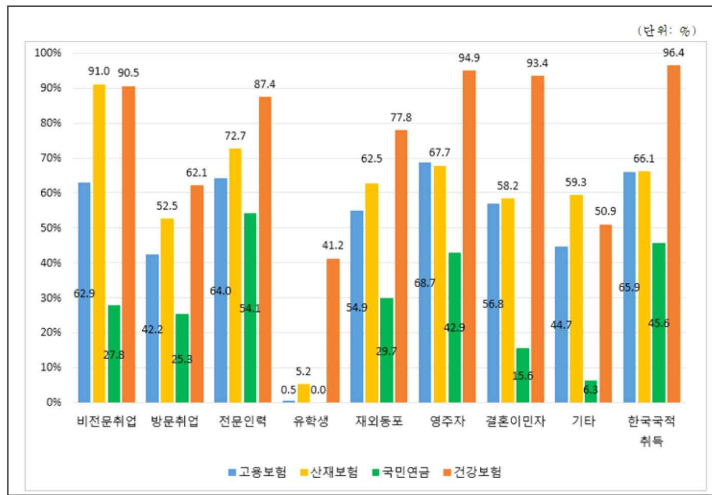
24

II

이주민 복지 현황



사회보험 : 이민자 4대보험 가입 현황



출처 :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현황: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2020). 원자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현황: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2019). 원자료

II

이주민 복지 현황



사회서비스

● 아동

- 아동복지법, 영유아복지법에는 외국인 기준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 영주, 결혼이민, 난민인정자만 포함
- 아이돌봄지원사업 : 영주, 결혼이민, 난민인정자만 포함

● 노인

- 노인복지법에는 외국인 기준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가입과 동일. 단, 취업활동 체류자격의 경우 장기요양보험가입자 제외 신청 가능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특례와 동일하게 적용(결혼이민, 난민인정자)

II 이주민 복지 현황

사회서비스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근거: 외국인 기준 명시
-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난민인정자 대상
- 단, 장애인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시설입소 및 이용 규정에 외국인이 제외되어 실질적 지원 안됨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제외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주거

- 공공임대의 경우 외국인 신청 불가
- 주거급여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기준에 따름(일부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포함)

II 이주민 복지 현황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 복지지원 내실화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

비전	국민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정책 목표 및 중점 과제	정책 목표	중점과제
	[상생]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1.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동 3. 관광력 및 투자자 등 유지를 통한 경제 활성화 4. 유입 체계 고도화 및 체류국적 제도 개선
	[통합]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1.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2. 이민배경 차내 역량 강화 3.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4.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안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1.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2.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인권]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1.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2.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3.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4.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 5.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정책 추진
	[협력]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1. 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 2.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3. 이민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 이민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지원

- 긴급복지지원 시행
: 국민의 배우자등 생계비, 주거비지원
- 아동복지법 적용 활성화
: 국내 외국인등록을 이행한 외국국적 아동 아동복지법 적용 대상임을 홍보, 관계자 교육 강화

▶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강화

-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노숙인, 국적취득 전 결혼 이민자 자녀 등의 의료 지원
- ※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사업

▶ 거주환경 개선

- 근로자 생활시설 개선 및 집중거주지역 환경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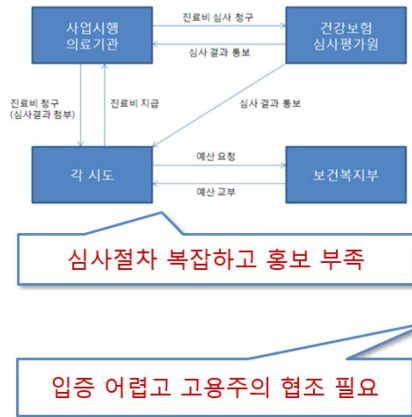
II

이주민 복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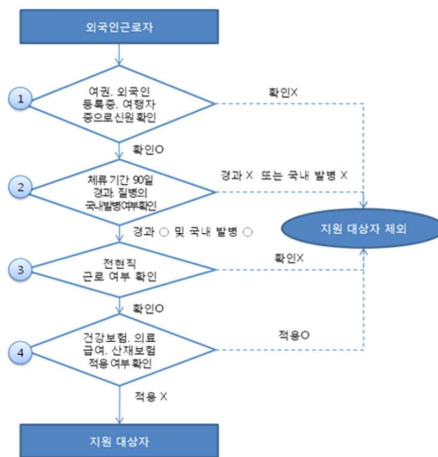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 의료지원 진료비 지급과정



▶ 지원대상 선정방법



출처: 보건복지부, 2015.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안내.

II

이주민 복지 현황



함께 생각해 볼 문제

-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 기준 : 국민 / 시민(citizenship) / 주민
 - 국제법 / 헌법 : 사람의 기본권 or 국민의 권리
 - 한국은 체류자격에 따라 사회보장, 보건의료 제도가 분절적임. 비기여적 급여에 대한 제한수준 높음
- EU의 CBP(Common Basic Principle), IOM의 GCM(Global Compact for Migration)
 - 에서 강조하는 수용국의 책무에 대한 재고 필요
 - 기본권에 대한 평등 원칙 / 차별금지의 원칙 / 기회와 자원에 대한 형평성
- 주요국 사례를 볼 때, 보편적 복지의 대상 어디까지?
 - 독일 : 영주자나 취업 체류자격자에 대해서는 아동, 노인, 장애인 허용, 사회주택도 일부 가능
 - 스웨덴 : 거주를 허가받은 외국인에게는 보육 및 아동급여, 노인, 장애인, 주거 모두 허용



감사합니다



e-mail : mj.park@mrtc.or.kr
연락처 : 02-3788-8035

이주민의 사회보장권

이 진 혜

이주민센터 친구 사무국장

I. 외국인에게도 사회보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

1. ‘인간의 권리’ 의 향유자로서 외국인

가. 헌법 제6조 제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헌법 제6조 제2항).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동조 제1항)는 조항과 함께, 이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밝힌다.

1989년 10월 5일 제3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1990년 3월 16일 제148회 국회(임시)의 동의를 얻어 1990년 4월 10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최호중 외무부장관 명의의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1990년 7월 10일부터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제9조)고 규정한다. 모든 사람이란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당사국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간을 지칭한다.

나. 헌법재판소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그 제한기준을 ‘인간의 권리’ 라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헌법상 기본권을 ‘국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로 나누고, ‘인간의 권리’는 외국인 역시 기본권의 주체로서,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다룰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개념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중국으로 이주한 자 또는 그 직계비속’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그리고 일부 참정권 등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따르기는 하지만 평등권의 주체가 된다고 판시하였다¹⁾. 그러나 이후 사회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을 구분하여, 사회권적 기본권

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하는 듯한 판시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 추구권이 사회권과 무관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다.²⁾

다.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관한 비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권리성질설’에 입각하여 외국인이 기본권 주체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사안별로 달리 적용하고, 특히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이유로 외국인을 기본권의 주체로 보지 않으려 하는 태도에 관하여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인간의 권리’로 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에 따라 생존권적 성격을 띠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권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평등권을 바탕으로 국적에 따른 차별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점, 조약 및 국제법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를 헌법 제6조에 따라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³⁾에 근거하여 수정 및 개선이 요구된다.

II.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통해 드러난 이주민 배제와 차별

1. 재난지원금의 법적 성격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주된 목적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여 궁극적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에 있다. 이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추구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 사회보장의 성격을 띠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1조는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경기도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역시 재난지원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명시하고 있다.⁴⁾

2.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지급

1) 헌재, 2022, 99헌마494 결정.

2) 이주영, 외국인의 사회권과 헌법재판소 판례 비판, 인권연구 1(1), 2018, p.81.

3) 김복기,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상 지위, 법제연구 제56호, 2019, p.31 참조.

4) 조재호,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과 재난지원금, 사회보장법연구 9(2), 2020, p.219.

가. 서울특별시 재난긴급생활비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대한 신속한 긴급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시행하였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등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는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판단하는데,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포함되지 않고 개인별로 거소등록 혹은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을 뿐이어서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예외적으로 결혼이민자와 난민 인정자 등은 포함하였다.

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경기도는 2020. 3. 23.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기간 중 경기도민인 자에 대하여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처음에는 외국인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가 2020. 5. 4. 조례 개정을 통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한 범위의 외국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한 비판

이주인권단체를 비롯하여 난민신청자, 외국국적동포, 혼인이주여성 등은 2020.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제기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위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였다. 해당 조례는 주민이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 (법 제12

조)이다. 주민등록법 역시 주민의 개념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다만 등록 대상에서 외국인을 예외로 정할 뿐이다. 서울시는 뿐만 아니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서울시 관내에 90일 이상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정의하고,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2조) 고 하여 외국인주민의 시에서의 지위가 한국인 주민과 동등함을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진정 제기 당시 외국인 전부를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이는 서울시의 경우와 같이 주민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정책으로 비판 받았다.

이러한 차별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상권의 상인에게도 간접 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취지 중 하나는 경기 부양 및 지역 상권의 활성화인데, 해당 상권에 살고 있는 주민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여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되어 결과적으로 상권 활성화 정책의 대상에서 소외되는 것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지자체에 대하여 차별 시정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고, 서울시는 이를 일부 수용하여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주민을 지급대상으로 확대하였다. 경기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혼인이주민과 영주권자를 지급대상에 새로이 포함하였다.

3. 정부 재난지원금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역시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실시하였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외국인의 경우 혼인이주민과 영주권자까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 경기도의 지급대상과 동일하였다.

이에 대하여 혼인이주민과 영주권자만을 지급대상으로 포함시킨 지급 기준이 불분명하며,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몰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를 고려할 때 위기상황에 처한 이주민 역시 그 지원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들 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정부의 강력한 전염병 관리 대책에 협조하고 격리 등 의무이행에 따르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그 피해를 사회적으로 분담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비판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잇따랐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시혜적 정책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사업 시행 주체에 폭넓은 재량권이 있다고 하며 진정을 기각하였다.

III. 지역 사회에서 만연해진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적 정책

코로나19 대유행은 그간 은폐되어 있던 외국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가시화하였다. 일회성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외국인 아동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보육료 차별로 인한 돌봄 공백의 문제,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의 활동 지원 서비스 배제로 인한 병원 방문 등 어려움의 증가 등 복지 현장 곳곳에서 드러나는 한계를 목도하였다.

더욱 큰 문제는 ‘재난지원금 정책’ 이후 고민없이 일부 외국인주민에 한하여 복지 정책을 펼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이다. 가령 서울특별시는 서울 거주 임산부에 대하여 7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였다.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 행정임이 지적되자, 국민의 배우자인 혼인이주여성에 한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문제를 무마하였다.

혼인이주민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한국인의 혼인 외 자녀를 임신한 외국인 미혼 임산부의 경우, 그 자녀의 친부가 한국 국적의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이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로서 문제 될 수 있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헌법이 특별히 국가의 모성 보호를 위한 노력 의무(헌법 제36조 제2항)를 규정

하고 있으며, 모성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할 때 합리성 없는 차별이 존재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정책 범위의 설정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자기 책임을 망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은 현재까지도 국민의 가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 국민을 재생산하거나 국가의 부양의무를 대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을 수급권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지부진한 시각과 태도는 정부의 재정적 부담 내지는 민주사회에서의 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외국인의 열악한 지위를 반영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부와 다른 접근 방식을 택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영토적 개념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뿌리내리고 살고 있으며 그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함께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로 인정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식과 태도는 장차 더 많은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미래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도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출생으로 이민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구소멸’을 두려워 하면서도 살고 있는 사람을 배척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언제까지나 유지할 수는 없다. 지방 정부는 실험적이고 선도적으로 이주민을 환대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인식과 관점의 전환을 통해, 이주민을 사회 일원으로 책임감있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03

2023 다(多)가치포럼

제1차 토론회

주제토론

모두가 삶의 행복을 누리는 사회를 바라며

이정은(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팀장)

〈구로 다(多)가치포럼〉에서 ‘이주민 복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한편, 이주민은 끊임없이 배제되고 소외되는 존재이지요. 이주민의 존재 없이는 더 이상 사회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함에도 국가나 지역정부에서 ‘복지’ 문제를 논할 때, ‘이주민 복지’는 가장 나중에 미루어집니다. 이 자리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다양한 현장 경험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야기가 오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이정은입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들어진 센터가 운영된 지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이주민 권리 구제에 필요한 상담,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민·관 협력 등 이주민권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이주민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정책 제언을 합니다. 구로와 가까운 경기 지역의 이야기를 전해줄 것이라는 기대로 저를 초대해주신 것 같아요. 풍부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토론자로 먼저 이야기를 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여기고 부담을 덜고 시작하겠습니다. 막상 토론문을 쓰고 보니 답이 아니라, 같이 나누고 싶은 질문들이 여럿입니다.

바로 오늘, 3월 21일은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날인데 유독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최근 들어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인종차별 때문입니다. 전북 고창에서 연세 30만원짜리 집에 살면서 난방비 걱정이 되어 불을 피우다가 질식사하였던 태국인 부부, 경기 포천에서 10년간 돼지농장에서 일하며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이웃과의 왕래가 거의 없는 채 살다 목숨을 잃자, 사업주에 의해 시신이 유기되었던 태국인 노동자. 두 사례 모두 미등록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더 처참한 환경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3년 전에는 강추위에 캄보디아인 노동자 속행씨가 비닐하우스 가건물에 살다 돌아가셨습니다. ‘복지’라고는 꿈꿀 수 없는 삶이었죠. 일상에서 안전과 건강이 보장되는 최소한의 삶이 그들에게는 사치였습니다. 꿈을 꾸고 찾아온 대한민국이었지만 그들의 삶이 곤경에 빠졌을 때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지원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유였습니다.

재난상황에서 더 극심해지는 불평등과 차별, 제도가 만든다.

코로나19는 인종차별의 맨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에 누구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공적마스크 제공, 백신 접종,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에 이르기까지 보편적 복지에서 떠밀리는 존재들이 이주민들이었습니다. 이주인권시민단체들은 ‘모두를 위한 방역’이 최우선해야 한다고 전면에 나섰습니다. 당연한 사실이 지켜지지 않았고, 불평등은 심화되었습니다. 물론, 비극은 이주민만 처한 현실이 아니었고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등 한국사회에서 약한 위치에 있는 존재들이 모두 차별을 겪었습니다. 엄연한 제도적 차별입니다.

경기도는 코로나 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전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가 이주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로 조례를 개정하여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10만 9천여명을 추가하였습니다.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주민의 수가 60만명이었으므로 50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은 배제되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이주민들의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인 부천시와 안산시, 자체 예산으로 이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인권위 권고 이후에 경남 양산시, 충북제천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급하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미등록이주민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점차 더 고립되었습니다.

‘국민’ 이 아닌 이유가 안전과 건강을 보장받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될까요?

이주민이 복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에는 앞에서 두 분의 발제에서 살펴보았듯이 법제도가 간단한 근거가 바탕이 됩니다. 헌법, 사회보장기본법 등에서 그 대상의 기준을 ‘국민’으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시시각각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휴대폰 알림으로 울리지만, 한국어로만 제공되기 때문에 정보접근성이 제약됩니다. 중국어, 베트남어 등을 시작으로 중앙정부를 통해 재난대응매뉴얼이 차차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주민들의 생활 세계에 직접 닿지 않았고 이주민들은 여전히 정보에 취약합니다. 막상 접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합니다. 이주민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존중 없이 기계적으로 번역된 것입니다.

지역정부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주민으로서의 권리에 대하여....

2020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면서 ‘이주공동행동’의 대리인이었던 이진혜 변호사는 지방자치법과 주민등록법 조항을 근거로 ‘주민’의 개념에는 이주민(외국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주민은 대한민국 영토에 존재하는 이상, 모든 법률상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와 달리 지역정부는 ‘주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자기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주민세를 내는 사람이지만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복지도 이제 적극적으로 논의하여야 합니다. 복지는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보편적 차원에서의 인권 존중의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지자체는 주민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거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며 거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경기도인권센터와 같이 지자체 차원에서 인권옹호 활동이나 인권 피해자 구제를 전담하는 정책이 시행되는 만큼 실효성있는 복지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로 가끔 시군구 지역에서 일하는 공무원분들의 연락이 옵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분이어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혹시 지원책이 있는지 묻습니다. 아는 정보를 총동원하고 손닿는 곳에서 살살이 찾아보신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답답한 마음에 연락을 주셨을 테죠. 집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살게 된 장애가 있는 중국동포, 폐지 수집으로 생활비를 모아 사시는데 전기도 끊기고, 집에는 거미줄이 가득한데 지역행정복지센터에서 거주지를 마련해드리려고 해도 거부하신다는 어르신 중국동포, 암에 걸렸는데 병원비가 없어 걱정인 중국동포... 사회복지 지원이 절실한 이분들의 공통점은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한 농축산업 노동자들의 숙소 개선 사업이 실제 각 지자체에서 80% 이상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식허가 받은 주거 건물이 아니고 사업주들의 협조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은 피해 당사자가 사실을 입증하고 권리를 끊임없이 요구해야만 겨우 보

장받는 사회입니다.” 곧 9주기를 맞는 4.16, 지난 토요일에 <기억의 교실> 프로그램에 동행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안내자이자 유가족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참으로 아픈 말입니다. 당연한 것이 지켜지지 않으니, 이를 바꾸기 위한 외침은 계속되어야 하지요. 그 분은 함께 하는 이들이 없었다면 이만큼 오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관심과 연대를 요청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주민들에 대해서 ‘당사자’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이주를 한 장본인을 당사자로 보통 일컫는데요. ‘이주인권, 인종차별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당사자’이지 않을까요?

이를 전면에 드러낸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구로 지역에서 함께 겪으셨기에 잘 아시죠? 2020년 코로나 재난 상황으로 인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한시적으로 아동수당을 확대 적용해서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외국 국적 학생은 제외되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교사모임을 비롯하여 지역교육 공동체들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SNS, 언론 등을 통해서 확산되었습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와 충남, 경남 등 지역에서 외국 국적 학생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게 된 사례입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주인권단체들의 운동, 시민들의 도청, 시청 앞 1인시위가 아니었다면 이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역시 그랬습니다. 가족에게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였는데 초기에 이주여성들이 배제되었습니다. 아래로부터의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한편, 이주민은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주민으로서 복지제도의 대상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와 다양한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들을 겪으며 이주민들이 더 이상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 이주민 안전문화 명예대사’라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2022 경기도 거주 외국인주민의 재난경험실태조사」를 통해 외국인주민을 포함, 지역민 전체가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는 포용적이며 보편적인 지역사회 재난안전망을 구축할 것이 제언된 것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계기로 재난 상황의 보호 대상이자 대응 주체로서 이주민의 위상과 역량을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재난안전 정책의 수립, 예방, 대응, 복구의 전 과정에 이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경기 각 지역에서 이주민 커뮤니티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스무 분을 선정하였고 10개월동안 관련 활동을 하게 됩니다. 각 지역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텐데 부산 지역에서는 이주민들을 위한 자체 앱을 개발하여 활용하시더라고요. 언젠가 각 지역의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서로 배우는 기회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한국사회는 여전히 이주민을 국민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여깁니다. 혐오와 차별이 만연합니다. 이주민을 단기체류자로서가 아니라, 정주를 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일은 요원한가요? 국민, 시민, 주민... 한 사람을 어떤 범주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 함께 사는 이웃이자 동료시민으로서 존중하고 다양한 존재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적 관점으로 사회복지정책이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요?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소수자가 취약한 환경에 놓이지 않기를, 이를 위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변화되어야겠지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원칙이 규범으로만 작동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험에 처한 이웃을 곁에 두고 무관한 상태로 자기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는 복지가 과연 실현 가능한가?’ 반문하면서 토론을 마칩니다. 함께 고민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발제문 '이주민의 사회보장권'에 대하여

김동훈(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센터장)

오늘 다가치포럼의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사무국장님의 '이주민의 사회보장권' 발제문에 대한 토론을 맡게 된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김동훈입니다.

이 발제문은 이주민에 대한 사회보장권을 법률가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로써 사회보장정책이 추진되도록 정부의 인식과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견을 가질 수 없는 발제라 저의 추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정책을 통해 드러난 이주민 배제와 차별 심화 현상은, 정책이 국민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충분한 사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발제문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서울시, 경기도 같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시각에 따라 그 성격 규정이 달라지고 세부 정책이 다르게 추진되어 왔음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따라 외국인주민에게 다르게 적용되었고 같은 외국인주민 내에서도 차별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더욱이 차별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판단도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결국 사회보장권에 있어서 국가기관이 국민과 다르게 외국인주민을 배제하고 차별적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민들이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이주민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사회의 혐오와 차별 현상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지급 취지 중 하나가 경기 부양 및 지역 상권의 활성화라고 하는데, 해당 상권에 살고 있지만 정책 대상에서 소외된 이주민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그 결과는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의 경기 침체와 그 지역 상권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겠지요. 결국 지역에 외국인주민의 유입을 막고 기피하게 되며, 기존 외국인밀집지역은 내국인들이 떠나는 현상을 가져오게 만들지요.

이는 차별적 정책이 혐오와 배제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일

것입니다.

또한 발제에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정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정책 인식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자기 책임을 망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고 하셨는데 적절한 지적으로 서울시는 이에 대한 인식변화를 빠르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미래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이루어 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음으로 정부는 '외국인주민'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지역사회의 한 주체로 인정하시길 촉구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대표적 지방정부로서 선도적으로 이주민을 환대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23. 02. 12. 경향신문에 “코로나19의 공격은 ‘평등’했지만, 일상으로의 회복은 ‘불평등’했다”라는 제목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난해 6~8월 실시한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통해 “생물학적 수준에서 코로나19는 모두를 ‘평등하게’ 공격했으나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은 ‘불평등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재난 상황에서 마땅히 이뤄져야 했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음을 보여줬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코로나 19 재난 이후 이주민은 회복에서도 불평등을 겪고 혐오와 차별적 상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책임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토론문을 준비하며 이진혜 사무국장님의 발제문은 법 전문가가 아닌 저에게 법률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잘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좀 더 짜임새 있는 토론 준비를 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앞으로 활동 현장에서 발제문에서 촉구한 바가 실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